

「2026년 안산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」 모집 공고

안산시와 (재)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안산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「2026년 안산시 수출물류비」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6년 5월 6일

(재)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

I

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6년 안산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
- 사업기간 : 2026. 01. ~ 연내 예산 소진시 까지
- 지원방식 : 기업에서 先 수행, 後 신청 및 지원(예산범위 내 서류평가 후 지원)
※ 경기기업비서(www.egbiz.or.kr) 온라인 신청

II

지원내용

- 지원대상(전부 충족)
 - 안산시에 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 제조기업
 - 전년도 수출액 2,000만불 이하 기업
 - 지방세 완납 기업
- 지원내용 : 물류비 총 소요비용의 70% 이내 지원(기업당 300만원 限)

지원내용	① 2026년 수출 신고된 건에 대한 국내·외 물류비(할증료 포함) 소급 지원 - 육로(국내), 해상, 항공 모두 지원 ②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등 운송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 비용 포함 - 운송료 견적서 내 항목 지원, 필증상 수출자구분 A&B에 한해 지원 가능, C는 외화입금증 또는 위수탁 계약서 필수 제출 ※ 지원가능한 인코텀즈 조건 : C & D, F는 선적전 물류비만 가능
지원비율	- 총 소요 비용의 70% 이내
지원규모	- 기업 당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
지원제외	①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국가간 운송료 ② 관세, 부가세, 창고보관비, 보험비 ③ 무상거래에 소요된 물류비(샘플 발송비 등) ④ 농식품 수출물류비(신선 및 가공식품 등) ※ WTO 농업협정에 따라 농식품 직접 수출지원 불가

III

신청기간 및 방법

○ 신청기간 : 2026. 05. 06.(수) 09:00 ~ 05. 20.(수) 18:00

※ 잔여 예산 발생 시 추후 2차 모집 추진(9월), 사업예산 전체소진 시 사업 마감.

○ 신청방법 : [경기기업비서\(www.egbiz.or.kr\)](http://www.egbiz.or.kr) 기업회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

- 1)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(<http://www.egbiz.or.kr>)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
- 2) [2026 안산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] 공고문 검색 및 클릭
- 3) 공고문 및 첨부파일 확인 후 서류 준비
- 4) 공고 하단 [지원사업 신청하기] 버튼 클릭 후 온라인 신청서 내용 입력
- 5) 신청서 하단 [제출서류정보]에 서류 등록(문서당 파일 크기 30MB 이하 / 압축폴더 업로드 불가)
※ 첨부파일을 등록 했더라도 [나의서류함] 클릭 후 [선택] 꼭 클릭!
- 6) 신청서 하단의 알림수신동의 '수신동의' 선택 후 '지원사업 접수' 버튼 클릭

○ 제출서류

- ① 지원사업 신청서 및 청렴서약서, 만족도 설문서(서식 1, 2, 3)
- ② 발송내역(서식 4)
- ③ 사업자등록증명원(2026년 발급본,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)
- ④ 공장등록증명(기업이 안산시에 소재하지 않을 경우 필수 제출)
- ⑤ 중소기업확인서('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' 에서 발급, 유효기간 확인 필수)
- ⑥ 지방세 완납 증명서(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)
- ⑦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
(※ 1년분(2025.1월~12월), 한국무역협회 or 한국무역통계정보포털 발급)

⑧ 기업 통장사본

⑨ 건별 운송비 지급 확인서류(※ 전부 제출)

- 물류사 인보이스, 전자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(또는 카드영수증, 카드사본)

- 수출신고필증(수출이행버전으로 제출)

- 선하증권(B/L)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(Air Waybill)

☞ 9번 건별 운송비 지급 확인서류의 경우 건별로 PDF 하나로 만들어서 제출.

※ [서류 평가 시 필요서류- 보유 시 필수 제출]

⑩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사본

⑪ 외국어 카탈로그 사본

⑫ 국내외 특허 사본

⑬ 해외규격인증 사본

⑭ 기업인증 서류(여성기업, 경기도 유망중소기업, 수출유망중소기업, 장애인기업, 벤처기업, 사회적 기업, 메인비즈(이노비즈), 고용 우수기업) / 최대3건 인정

IV**선정 및 지원**

- 선정방법 : 신청기업의 지원자격 적격여부 검토 및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및 지원
- 선정기준 : 적격성 통과 기업 대상으로 서류심사 후 고득점 순 선발
 - 평가항목

평가	세부사항		배점
적격성	지원대상 여부 검토	· 제조 중소기업 해당 / 수출실적 2,000만불 이하 / 지방세 완납여부	적합 / 비적합



서류평가	정량평가 (100)	· 기업현황(소재지) / 전년도 수출액 / 수출 경쟁력(제품인증 등)	100
	가점 (5)	· 기업인증 및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이력	5

※ 동점 기업 발생시 ‘전년도 수출액’ ▶ ‘수출경쟁력’ ▶ ‘모집 신청일’ 고득점(빠른) 순

- 지원금 지급 : 지원결정 후 익월말 일괄 지급 예정

※ 지원금은 백원단위 절사하여 지급함.(ex: 554,430원 -> 554,000원)

- 지원제외 대상

- 타 지자체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수출건에 대해 수출물류비 지원 받은 경우
-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
- 유통업, 도소매, 무역업 등 제외
-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V**문의처**

- 사업담당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거점센터 이정학 과장

- 연락처 : ☎070-7116-4814 / FAX 031-432-5536 / E-mail : korea9519@gbsa.or.kr

VI

기타 유의사항

○ 유의사항 안내

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과원 [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]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.

- ①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- ②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시)
- ③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
- ④ 경기도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

○ 클린민원신고 안내문

(재)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.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자가 금품·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접수 불가나 반려 처리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때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부조리 신고창구 : 031-259-6251
- 센터 홈페이지(www.gbsa.or.kr) → 클린센터 신고하기

VII

참고사항

○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방법 (※조회기간 : 2025. 01. ~ 12.)

1)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

- 회원사

* 온라인 :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(webdocu.kita.net)

(www.KITA.net → 회원사 →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)

자사실적조회 : www.KITA.net → 회원사 → 자사수출입실적조회

* 오프라인 : 한국무역협회 방문(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)

- 비회원사 : 한국무역협회 방문(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)

2)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

* <http://www.trass.or.kr> 방문(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)

→ 메인화면의 '자사수출입정보' 또는 상단 메뉴의 '자사실적정보' 클릭

→ 페이지 하단의 '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' 클릭

→ 기간 설정 후 '조회' 버튼 클릭

→ '증명서주문'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